보조사업 관리 규정

제정 2020. 6. 3. (규정 제3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춘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이라 함은 춘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사업 또는 예술활동 등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과 춘천 지역과 관련한 학술연구활동, 학술 대중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원이 수행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말한다.

2.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문화원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춘천문화원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

2. 춘천학 학술연구활동 및 춘천학 관련 저변 확대 사업

3.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 신청서를 문화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부결정) 문화원이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규정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해당 보조사업 취지 부합 여부

3.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교부조건) ① 문화원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원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교부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교부결정통지) ① 문화원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내용과 조건을 기재한 교부통지서를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부)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사업 신청자의 교부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

제10조(사정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문화원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변경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7조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보조금의 교부내용을 허위로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변경하거나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문화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학술연구와 관련된 연구비 보조금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에 한한다.

제14조(보조사업 정산검사) ① 문화원은 제13조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정산검사를 한다. 다만, 정산검사에 따른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현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조사업 기간 중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정산결과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문화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사업 신고)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지한 경우

2.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

3.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문화원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의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규정에 의한 의무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산, 평가를 거부한 경우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제17조(규칙 등)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0.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